i-KIET 산업경제이슈

제225호 2026-25

발행일 2026년 8월 12일 | **발행인** 권남훈 | **편집인** 이두희 | **발행처** 산업연구원

한국-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

박혜지 연구원 | **김미정** 부연구위원 | **심순형** 연구위원

- **'한국-나토 조달기본협정'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이 나토 공동조달 및 군수지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**
 -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통해 드러난 나토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-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추진
 - 본 협정을 통해 획득·군수·운용유지·체계지원 등 나토 지원조달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가능
- **협정 논의를 계기로 나토 방산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**
 - 기존 완제품 수출시장뿐 아니라, 탄약·부품·소재, MRO, 성능개량 및 교육훈련 등 장기·반복적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주기 시장으로 진출 가능
 - 방산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과 드론·AI·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가능성이 확대
 - 비회원국에 공개가 제한되었던 나토 표준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
- **그러나 조달기본협정은 나토 방산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통로로서, 회원국 간 축적된 동맹 관계와 신뢰를 대체하기에는 한계**
 - 나토 국가에 대한 현지화와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EU SAFE, 나토혁신펀드와 같은 역내 협력수단을 활용하는 등 중장기 시장진입 전략이 필요
 -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협정 조항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
 - '북·러 군사협력 대응'과 같이 한국과 나토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안보협력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축적하고 장기적 방산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

핵심 주제어: 나토, 조달기본협정

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가 보여준 '동맹의 벽'

-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(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, CPSP)은 2026년 7월 캐나다 정부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[1]하며 일단락
 - CPSP는 캐나다의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규모의 신형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, 건조뿐만 아니라 30년 이상의 운영유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총사업비가 약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
 - 한국은 한화오션·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참여하여 장보고-Ⅲ 잠수함 성능 시연, 조기 납기,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앞세워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한 채로 마무리
- 이번 사업의 결과는 국내 방산제품의 성능·가격 이외에,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, 이하 나토)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MRO의 효율성 등이 방산수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입증
 - 캐나다는 성능(20%),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(50%), 계약 조건 및 가격(15%), 경제·전략적 협력(15%)의 4개 기준으로 평가하였고,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 측면에서 독일·노르웨이와의 나토 상호운용성 및 유럽 정비 인프라 접근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
 - 캐나다 정부 또한 독일의 212CD형 잠수함이 북극 해역에 최적화되어 있고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선정 사유로 밝힘.[2]
 - 한국 정부와 기업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기술력만으로 넘기 어려운 나토 동맹의 현실을 확인하였다고 평가[3]

〈표 1〉 캐나다 CPSP 사업 결과

평가요소 및 비중		한국	독일
성능 (Platform)	20	• 장보고-Ⅲ 배치Ⅱ 기반, 캐나다 요구 대비 조기 납기 제안	• 212CD형, 다이아몬드형 선체 등 스텔스 설계 • 북극 최적화
유지보수 및 군수지원 (Sustainment)	50	• 한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 노하우 보유 • 영국 밥콕사와 전략적 제휴	• 나토 회원국 상호운용성 강조 • 유럽 및 역외 정비인프라 접근성 강조
계약 가격 (Financial)	15	• 총수명주기 고려 시 유사한 수준	• 총수명주기 고려 시 유사한 수준
경제적·전략적 협력 (Strategic and Economic Partnership)	15	• 잠수함 관련: 현지 생산·기술이전·인력양성 • 산업협력: 수소 생태계 등 경제협력 패키지 제안	• EU·나토 연계한 경제협력 • 노르웨이 정비협력 등 동맹기반 제안
종합결과	100	예비 공급업체로 지정	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자료: 김미정(2026),「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함의와 한-캐나다 산업협력 확대방안」, i-KIET 산업경제이슈 제217호, 산업연구원 및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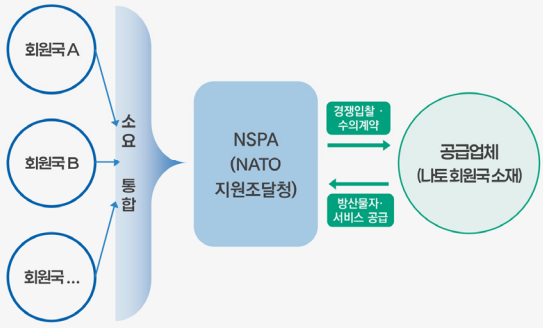
- 나토 비회원국으로서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한국-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추진
 - K-방산의 지속가능한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나토 동맹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, 이를 위해서는 나토 조달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
 - 한국은 나토 회원국과 양자 간 방산수출(폴란드 K9 자주포, K2 전차 등)에 집중해 왔으며,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
 - 조달기본협정 체결은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1 연합뉴스(2026), "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사업 독일 TKMS로…한화오션 고배(종합)", 7월 7일.
2 Prime Minister of Canada(2026), "Prime Minister Carney announces the preferred supplier for the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– the largest defence procurement in Canadian history", July 6.
3 연합뉴스(2026), "한화오션·HD현대중 "수주 불발 아쉽지만 K-방산 도약 계기로"(종합)", 7월 7일, 중앙일보(2026), "'캐나다 잠수함' 고배에 강훈식 "다른 기회 문 여는 이정표될 것", 7월 7일.

나토 비회원국에 '조달기본협정' 체결이 갖는 함의

- 한국 정부는 2026년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한국-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
 - 조달기본협정은 한국 정부가 사용한 용어로, 나토가 비회원국과 체결하는 '지원 협력 협정(agreement on support cooperation)'에 해당[4]
 - 지원 협력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협력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, 획득·군수·운용 및 체계지원 분야의 협력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
 - 이를 통해 한국은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
- 나토 공동조달 체계는 나토 지원조달기구(NATO Support and Procurement Organisation, NSPO)의 집행기관인 나토 지원조달청(NATO Support and Procurement Agency, NSPA)이 주관하며, 공급업체는 주로 나토 회원국 소재 기업 및 정부기관으로 제한
 - 나토 비회원국 기업이 NSPA의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단독 공급원인 경우, ② NSPO 지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경우, ③ 나토 신탁기금에 기여하는 경우, ④ 나토 주도 작전에 파병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
 - 공동조달 절차는 NSPA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① 공급업체 등록, ② 사전공고 및 조달공고 확인, ③ 제안서 제출 및 평가, ④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되며, 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

〈그림 1〉 나토 공동 소요·조달시장 운영 원리



〈그림 2〉 나토 공동조달 거버넌스 구조



자료: 나토 홈페이지(nato.int) 및 NSPA 홈페이지(nspa.nato.int)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.

- 나토 비회원국이 나토와 획득 부문을 포함한 지원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기업이 NSPO의 사업 전반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됨을 의미
 - 이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로 확보,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제고, 서방 방산 공급망으로의 편입 등의 전략적 함의를 내포
 -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나토 공동조달 시장뿐 아니라 나토 공동재원으로 조달하는 위성, 감시정찰 등 사업에도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
-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호주와 더불어 획득 부문을 포함한 지원 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,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권한을 보유한 비회원국 대열에 합류할 전망

4 '지원 협력 협정(agreement on support cooperation)'은 나토가 비회원국과 체결하는 협정 중 하나로, '조달기본협정'은 그 범주에 속하는 협정으로서 한국이 추진하는 협정을 지칭하는 한국 정부의 용어이고, '획득 및 지원 협력 협정'은 호주가 나토와 체결한 개별 협정명에 해당.

호주-나토 '획득 및 지원 협력 협정' 사례

- 2025년 6월, 호주는 NSPO와 「호주-NSPO 획득 및 지원 협력에 관한 협정」에 서명했으며, 이 협정은 획득을 포함한 NSPA 활동·서비스의 전 범위에 비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
 - 2026년 5월 호주 정부는 본 협정을 의회 조약합동상임위원회(JSCOT)에 회부하여 비준 심사를 진행 중이며,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외교공한 교환을 거쳐 발효될 예정
- 본 협정문은 호주 정부와 NSPO 간 획득, 군수, 운용지원, 체계지원 및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과 기본 원칙을 규정
 - 특히 전문(Preamble)을 보면 본 협정이 호주에 나토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되 파트너국 지위에서 획득을 포함한 NSPA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
 - 단, 무기체계 하자 발생 시 호주에 위험부담 부과, 분쟁해결기구의 부재, NSPO 인력의 면책 특권 부여 등 나토 공동조달 시장의 수요자 입장인 호주에 피해 우려
- 2026년 호주 정부는 「호주-NSPO 획득 및 지원 협력에 관한 협정」에 대한 의회의 비준 심사를 위해 「국익분석서(National Interest Analysis)」를 함께 제출했으며, 본 분석서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국가 차원의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·제도 정비, 재정 및 책임 부담 등을 포괄

〈표 2〉「호주-NSPO 획득 및 지원 협력에 관한 협정」 주요 내용

구분		주요 내용
전문		**• 나토와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(호주의 경우 ITPP) 보유를 협정 체결의 전제로 명시** **• 획득·군수·운용 및 체계지원 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** **• 본 협정이 호주에 나토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**
제1조	정의	• 협정상 주요 기구 및 법적 용어 정의
제2조	목적 및 범위	**• 호주-NSPO 협력을 위한 포괄적 법적 틀 및 기본 원칙 규정** • 후속 이행 문서 체결 근거 마련 • 제3자에 대한 권리·의무 미발생
제3조	일반 의무	•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정 이행 • NSPO에 협력 수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
제4조	해석	• 협정의 영어본 우선 적용 • 협정 해석 시 국내법 우선 배제
제5조	법인격	• NSPO의 호주 내 법인격 인정 • 계약·재산·소송 수행 능력 부여
제6조	특권 및 면제	**• NSPO 및 그 직원의 특권·면제 부여** • 조세·관세·재판권 면제 및 불가침 보장
제7조	책임	• NSPO의 무책임 원칙 • 호주의 위험 및 손해배상 책임 부담
제8조	보증	**• NSPO의 보증책임 배제** **• 제조사 등 상업적 보증 이전**
제9조	비밀유지 및 보안	• 나토 보안기준 적용 • 호주-나토 비밀정보보호협정(Security Agreement)에 따른 비밀정보 취급
제10조	재정 규정	• 수요자 부담 원칙 적용 • 비용 부담 및 재정 운영 기준 규정
제11조	발효	• NSPO 기관감독이사회(ASB) 승인을 선행조건으로, 마지막 외교 공한 접수일에 발효
제12조	개정절차	• 서면 상호 합의로 개정, 60일 내 미회신 시 제안 거부 간주
제13조	종료	• 서면 통보에 따른 협정 종료 절차 규정 • 종료 후 제7조·제9조·제10조·제14조의 존속 의무 명시
제14조	분쟁해결	**• 외부 재판·중재 없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원칙**

자료: 「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(나토) Support and Procurement Organisation (NSPO) on Acquisition and Support Cooperation」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.
주: 제15조는 서명 내용으로 〈표 2〉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음.

〈표 3〉「호주-NSPO 획득 및 지원 협력에 관한 협정」에 대한 호주 정부의 「국익분석서」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협정 체결의 필요성 (「국익분석서」 3~7항 참조)	• **NSPA가 운영하는 모든 전력 획득 및 유지·운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** • 나토와의 획득·군수지원 협력 확대 • **기존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체계의 한계 보완**
국가 차원의 이익 (「국익분석서」 4~7항 참조)	• 나토 회원국과 공동조달 및 군수지원 수행으로 **국방획득 비용 절감** • 전력유지·군수지원 **역량 강화** • **나토와의 상호운용성 증대** • **호주 방산기업의 나토 공급망 진출** 및 **자주적 방산 기반에 대한 투자·산업발전 기회 확대**
국내 이행조치 (「국익분석서」 30항 참조)	• 국방부가 협정 이행을 주관하고 외교통상부·법무부와 협의하여 추진 • 협정상 법인격·특권·면제 의무 이행을 위해 「국제기구(특권 및 면제)법 1963(IOPI Act 1963)」 하위 법령 제정 필요 • 나토를 동 법 적용 국제기구로 지정하고 NSPO에 법인격·특권·면제 부여
책임 및 위험 관리 (「국익분석서」 24·31항 참조)	• 협정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과 책임을 호주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, 국방부는 개별 협력사업·프로그램별로 책임 위험 평가를 실시 • 협정 제7조에 따른 모든 책임 부담은 정부의 승인 절차와 사업별 책임 위험 평가를 거친 후에만 이행
비용 부담 (「국익분석서」 33·34항 참조)	•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(행정비·자본투자 회수비·NSPA 운영비) 부담 • 모든 비용은 실제 발생 전 호주의 승인 필요 • 호주가 협정 종료를 요청할 경우 그 종료에 따른 비용은 호주가 부담
협의 (「국익분석서」 첨부 참조)	• (연방정부 부처) 협정 이행 주관부처인 국방부가 부처 내부와 총리내각부·외교통상부·법무부·재무부와 협의했으며, 특별한 우려 사항 없음. 연방집행위원회가 2025년 6월 호주의 협정 서명 승인 • (주(State)·준주(Territory) 정부) 총리내각부 산하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, 접수된 추가 의견 없음 • (국민·산업계) NSPO의 특권·면제 반영을 위한 IOPI Act 1963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 예정. 단 국방 역량 사안이자 비공개 협상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개 협의는 미실시

자료: 「National Interest Analysis [2026] ATNIA 2,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NSPO on Acquisition and Support Cooperation(2025)」 국익분석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- 호주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나토와의 획득 및 군수지원 협력을 확대하고, 국방획득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
- 한편, 협정에 따라 NSPO의 특권·면제 부여와 호주의 책임 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국내법 정비와 사업별 책임 위험 평가 실시 등 필요한 이행조치를 병행할 계획도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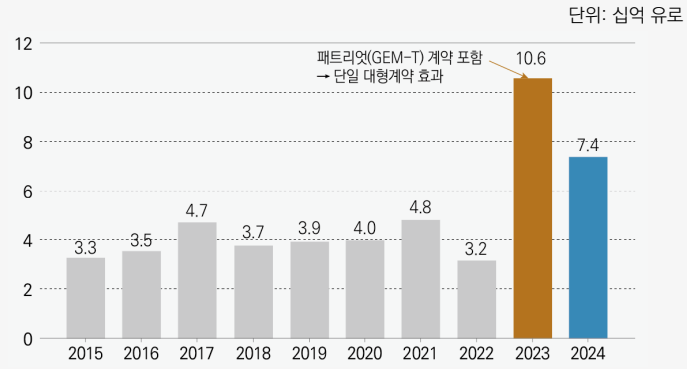
- **종합하면 호주는 협정 체결을 통해 나토 회원국·평화를 위한 동반자(PfP) 국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NSPA의 전 획득·유지·폐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확보**
 - 특히 호주 기업 입장에서는 NSP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나토 공급망 진입 기회를 확보함은 물론,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방산투자 확대 등으로 잠재적 성장경로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다만 이 협정으로 국내 조달 물량이 NSPA 공동조달을 통해 해외 공급자에게 이전될 경우 자국 방산기업의 국내 매출·생산기반이 오히려 잠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
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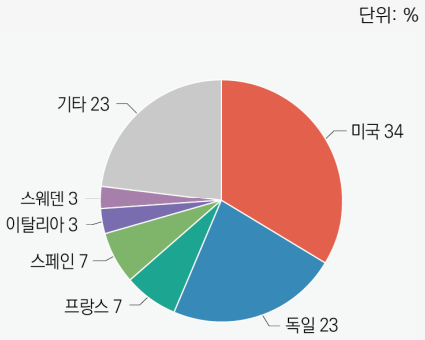
- **(공동조달 시장 접근) 연간 약 15조 원 규모[5]의 나토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**
 - 호주의 사례와 같이 나토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NSPA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경우, 잠재적 수출시장의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
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NSPA의 연간 조달 규모가 예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, 2026년 나토

5 정부 추산 기준. 외교부(2026), "한-나토, 조달기본협정 추진…나토 군수·방산 조달 참여 기대", 7월 8일.

〈그림 3〉 NSPA 연간 사업규모 추이 (2015~2024)



〈그림 4〉 NSPA 조달사업에 대한 국가별 계약현황(2024)



자료: NSPA Annual Report 2024를 기초로 저자 작성.

정상회의에서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조달계획과 약 400억 달러의 대드론 분야 투자 계획이 발표[6]되는 등 향후 신규 수요도 지속 증가할 전망

* 단, 〈그림 4〉와 같이 2024년 NSPA의 국가별 계약액 기준 상위 5개국이 약 74%(2023년 79.8%)를 차지하여 한국 등 신규 진입국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은 상위 국가를 제외한 약 20~30%로 추정

- **(상호운용성의 단계적 제고) 한국 방산제품과 나토 표준 간 간극을 단계적으로 좁힘으로써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효과 기대**
 - 방산물자에 관한 나토 표준(Standardization Agreement, STANAG)[7]은 해당 장비·물자의 성능·방호·안전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을 등급 또는 규격으로 규정하며, 공동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품목별 기준 충족이 필요
 - 그러나 현재 한국은 나토 글로벌 파트너국 지위에 있어 STANAG 기준에 관한 접근성이 제한
 * STANAG 문서는 배포 등급에 따라 접근 범위가 상이하여, 한국은 공개 등급 문서에 한해 열람이 가능
 - 2026년 5월 제2차 한·나토 방산협의체에서 방산물자의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서는 나토 표준 정보 확보가 국내 방산업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[8]

〈표 4〉 NSPA 사업영역과 한국의 참여 기회

사업영역	세부 내용	한국의 기회
획득 (Acquisition)	• 신규 주요 무기체계의 개념·개발·생산 단계 관리, 다국적 협력 사업 및 국제 경쟁입찰	• 완제품 수출 • 공동개발 참여
창정비·성능개량 (Overhaul and Upgrade)	• 운용 중인 주요 장비 및 체계의 현대화, 창정비·성능개량 (Mid-life upgrade)	• 성능개량 사업 참여
운영유지 (In-service Support)	• 정비·수리·부품공급 등 수명주기 전반의 MRO 기술 서비스 및 형상 관리	• MRO 및 예비부품 수출
구매대행 (Brokerage Service)	• 탄약·상용품(COTS) 등의 공동구매	• 탄약·부품 수출
작전지원 (Operational Support)	• 야전 실생활 지원·공항 서비스·연료·수송·인프라 건설 등 현장지원	• 관련 인프라 및 기자재 수출

자료: NSPA Annual Report 2024 Annex 2를 기초로 저자 작성.

6 NATO(2026), "Secretary General on the Ankara Summit: NATO delivers", July 8.
7 나토 회원국들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비·물자·절차·용어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표준화 협정을 의미.
8 방위사업청(2026), "방위사업청-나토, 제2차 방산협의체 개최… 방산협력 논의", 5월 11일.

- 따라서 단기적으로 분야별 협력사업(탄약·우주·원자재 등)을 매개로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, 중장기적으로 협정 체결을 통해 표준정보 접근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나토의 공통 요구 성능과 표준 개정 방향을 조기에 파악할 필요

- **(후방산업 공급망 협력) 조달기본협정 논의를 계기로 방산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, 소재 단계부터의 협력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
 - 한국은 기존 탄약·우주 분야에 이어 2026년 7월 나토 회의를 계기로 방산 핵심원자재* 공급망 구축 사업에 옵서버로 새롭게 참여
 * 알루미늄, 베릴륨, 코발트, 갈륨, 게르마늄, 흑연, 리튬, 망간, 백금, 희토류, 티타늄, 텅스텐 등
 - 옵서버 참여는 비축물량 확보 등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지위는 아니나 핵심소재 우선순위, 공급망 취약성, 공급처 다변화, 공동비축, 운송·저장, 재활용 및 대체소재 개발 방향 등을 조기에 파악 가능
 - 한국 방산기업에 필요한 티타늄·텅스텐·희토류·흑연 등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, 비축·대체조달·재활용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

- **(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) 나토 혁신훈련장(민간 혁신기술의 실전 평가·검증 플랫폼) 참여로 드론·AI 등 미래전 첨단기술의 실전 운용 경험 축적**
 - 나토 회원국 우주기업 협력망인 '스페이스넷'에 참여하여 우주 정보공유·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개발의 기회를 확보하고, 한-나토 협력 확대를 통해 북-러 군사협력 견제 효과도 기대

한국-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정책적 함의

- **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나토 국가의 수요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로 발생**
 - 전력공백, 조기 전력화 필요 등 가격·납기 경쟁력이 강조되는 긴급 소요 상황에서 주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
 - 반면 장기적 방산협력, 상호운용성, 전략적 파트너십이 평가 기준의 중심이 되는 사업에서는 나토 회원국이 생산한 장비를 선택하는 성향이 뚜렷
 - 캐나다 잠수함 사업(CPSP)이 대표적인 사례로서, 국산 잠수함이 납기·가격·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·노르웨이의 '나토 동맹국 간 공동운용' 제안에 밀려 탈락
 - 이는 국산 무기체계의 자체적인 경쟁력만으로는 나토 동맹 기반의 상호운용, 군수지원 체계 및 장기간 축적된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경쟁우위를 상쇄하기 어려움을 시사

- **한-나토 조달기본협정은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적 열세를 완화하기 위한 접근 중 하나이나, 그 실효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할 필요**
 - 공동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권한 확보, 공동개발을 위한 혁신 인프라 공유, 나토 규격 공개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등은 나토 비회원국의 지위에서 비롯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
 - 그러나 이 협정은 나토 방산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첫 단계에 해당
 - 나토 회원국 간 장기간 축적된 안보협력과 정보공유의 관계를 협정 체결만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, 이는 별도의 장기적 신뢰 구축 과정을 통해서만 보완이 가능

- **조달기본협정을 계기로 나토 방산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거시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**
 - 나토 현지화와 브랜딩을 통해 방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, EU SAFE와 나토혁신펀드(NATO Innovation Fund) 등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트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- 이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의 지식재산권 공유, 현지조달 비율 충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
-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의 범위가 커지고 방산수출의 산업 파급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, 기술이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보호 대책을 마련
- 그뿐만 아니라, 역내 방산 공급망 재건과 민간 제조업 고도화를 연계하는 '민간 산업협력 패키지'를 제안하는 등 나토 회원국의 경쟁상대와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요구

- **국내 시장개방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협정 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**
 - 나토 방산시장에 대한 일방적 접근권 요구는 협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국내 방산조달 시장의 일부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상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
 - 특히, 나토 공동조달 시장은 회원국들이 소요 제기와 계약 수주를 상호 분담하는 호혜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, 한국이 소요 제기 없이 수주만을 추구할 경우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무임승차라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
 - 유일한 참고 사례인 호주-나토 협정은 주로 위험·법적 책임·하자담보 리스크를 대부분 호주가 부담하고 NSPO에는 강력한 면제·불가침 혜택이 부여
 - 호주의 선례를 모두 따르기보다, 하자담보 책임 범위·기간의 명확화, 나토 조달청과 한국 기업의 지재권 방어 비용 분담, 상업계약에 한정된 중재조항 확보, 중재기구 마련 등 국내 방산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

- **궁극적으로 나토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안보협력 이슈를 발굴할 필요**
 - 방산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안보협력과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
 - 예컨대 나토가 우려하는 '북·러 군사협력'과 관련된 정보제공·분석은 다른 인도·태평양 파트너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한국만의 안보협력 사안으로, 방산협력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
 - 이 외에도 방산 공급망, 기후변화, 사이버 안보, 대테러, CBRN 등 양자 간 이해관계에 기반한 포괄적 안보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사업을 조율해 나갈 필요
 - '공동 안보이슈 발굴 → 공동 소요 발굴 → 공동개발 → 조달 시장 진입'으로 이어지는 방산협력의 선순환 경로를 구축함으로써 비회원국이라는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보

저자
박혜지 방위산업연구팀 연구원 | hjpark@kiet.re.kr | 044-287-3827
김미정 방위산업연구팀 부연구위원 | mjkim@kiet.re.kr | 044-287-3257
심순형 방위산업연구팀 연구위원 | simsh@kiet.re.kr | 044-287-3214

KIET 산업연구원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287-3114 | FAX 044-287-3333 | 홈페이지 www.kiet.re.kr

이 글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이 글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